

1. 개정이유

기존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방식의 경우 세분화된 평가항목과 평점 위주의 정량평가로서 다수사상자 재난 등 신유형의 재난 대응 평가에 적합하지 않고 평가 종료 후 행정 절차 상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있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평가항목의 단순화(안 제38조제1항), 서술 위주의 정성평가(현행 제41조제3항 삭제)

- 1) 이태원 참사('22.10.29.)의 경우 시설물 피해가 없으면서 폐쇄공간이 아닌 곳에서 다수사상자 발생한 신유형의 재난으로 평가항목이 세분화되고 평점 위주의 정량평가인 기존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방식의 경우 개선사항 발굴 등 평가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어려움
- 2) 기존 세분화된 평가항목과 평점위주의 정량평가를 평가항목의 단순화 및 서술위주의 정성평가로 평가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개선사항 발굴 등 평가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함

나. 평가결과보고서 통보 대상 시·도지사 제외(안 제42조제1항)

- 1) 시·도 소속 재난부서의 장인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 시·도지사에게 평가결과보고서를 보고하거나 통보할 경우 해당 시·도 재난담당부서인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보고되거나 통보되는 문제가 있음
- 2) 평가결과보고서 통보 대상에서 시·도지사를 제외하고 소방청장에게만 보고하거나 통보하게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개선

다. 평가결과 개선사항 통보의 임의규정화(안 제42조제2항)

- 1) 통제단장이 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·보완 사항을 1월 이내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통보가 불필요한 사소한 개선사항의 경우에도 통보해야되는 문제가 있음
- 2) 통제단장이 개선·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개선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**자원**”을 “**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**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동원 자원의 관리

제3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임무에 대한 이행

제38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긴급구조지원요원의 상황 접수 후 조치

나. 긴급구조지원요원의 재난상황 정보 제공

다. 긴급구조지원요원의 임무수행

제38조제1항제3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통신 시설·장비

나.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비상소집활동

제38조제1항제4호다목 중 “**대체**”를 “**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체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수수료 현황

제38조제1항제5호가목 중 “**긴급구조**”를 “**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**”로, “**관리자의 교육이수율**”을 “**관리자 긴급구조 교육 이수**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가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나.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훈련 실적

제41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42조제1항 중 “**소방청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**”을 “**소방청장에게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평가종료 후 1월 이내에 해당**”을 “**해당**”으로, “**통보하여야 한다**”를 “**통보할 수 있다**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8조(긴급구조활동 평가항목)	제38조(긴급구조활동 평가항목)
①영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단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긴급구조활동을 평가하여야 한다.	①----- ----- ----- -----.
1.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운용	1. ----- -----
가. <u>자원 동원현황</u>	가. <u>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</u> -----
나. <u>필요한 대응자원의 확보</u> <u>· 관리 및 배분</u>	나. <u>긴급구조지원기관의 동원</u> <u>자원의 관리</u>
2. 긴급구조대응계획서의 이행 실태	2. ----- --
가. <u>지휘통제 및 비상경고체계</u>	가. <u>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</u> <u>긴급구조지원기관별 임무</u> <u>에 대한 이행</u>
(1) <u>작전 전략과 전술</u>	
(2) <u>현장지휘소 운영</u>	
(3) <u>현장통제대책</u>	
(4) <u>긴급구조관련기관</u> <u>· 단체간 상호협조</u>	
(5) <u>통제 · 조정의 이행</u>	
(6) <u>사전 경보전파 및</u> <u>대피유도활동</u>	
나. <u>대중정보 및 상황분석 체</u>	<u><삭 제></u>

계

- (1) 대중매체와 주민들
에 대한 재난정보
제공
- (2) 재난정보 제공에
따른 주민들의 대응
행동
- (3) 통합작전계획의 수
립을 위한 정보의
수집 및 분석
- (4) 긴급구조관련기관
· 단체의 정보 공유
- (5) 잘못 전달된 정보
및 유언비어의 시정
- (6) 대중매체와 주민의
불평

다. 대피 및 대피소 운영체계

- (1) 대피를 위한 수송
체계
- (2) 주민대피유도
- (3) 대피소 시설의 규
모 및 편의성
- (4) 임시거주시설의 규
모 및 편의성
- (5) 대피소 수용자들에
대한 음식·담요·

<삭 제>

<u>전기공급 등 지원사</u> <u>항</u>	
<u>라. 현장통제 및 구조진압체</u> <u>계</u> (1) <u>재난지역에 대한</u> <u>경찰통제선 선정과</u> <u>교통통제</u> (2) <u>범죄발생 예방활동</u> (3) <u>진압작전수행</u> (4) <u>소방용수 등 자원</u> <u>공급</u> (5) <u>탐색 및 구조활동</u> (6) 「<u>화재의 예방 및</u> <u>안전관리에 관한 법</u> <u>률</u>」에 따른 자위소 방대, 「<u>의용소방대</u> <u>설치 및 운영에 관</u> <u>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의용소방대 및 「민</u> <u>방위기본법</u>」에 따 른 <u>민방위대 등의</u> <u>임무 수행</u> (7) <u>긴급구조관련기관</u> <u>간 협조체제</u>	<u><삭 제></u>
<u>마. 응급의료체계</u> (1) <u>환자분류체계</u>	<u><삭 제></u>

(2) <u>현장응급처치</u> (3) <u>환자 분산이송 및 병원선택</u> (4) <u>의료자원 공급 및 의료기관간 협조체 제</u> (5) <u>현장 임시영안소의 설치·운영</u> (6) <u>사상자 명단 관리 및 발표</u>	
<u>바. 긴급복구 및 긴급구조체 계</u> (1) <u>잔해물 제거 및 긴 급구조활동 지원</u> (2) <u>피해평가작업의 지 원활동</u> (3) <u>2차 피해방지 및 보호작업</u> (4) <u>응급복구 및 피해 조사의 시기</u> (5) <u>구호기관의 지원활 동</u> (6) <u>상황 및 시기에 적 합한 구호물자 제공</u>	<u><삭 제></u>
3. <u>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</u> <u>가. 정보접수 후 긴급조치</u>	3. ----- <u>가. 긴급구조지원요원의 상황</u>

<u>나. 긴급구조관련기관·단체가 제공한 재난상황정보의 정확성</u> <u>다.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의 운영 및 자원통제</u> <u>라. 상황정보 및 자원정보와 작전계획의 연계</u> <u>마. 단위책임자들의 작전계획서 활용</u> <u>바. 대피명령의 시기</u> <u>사. 위험물질 누출 및 확산 통제</u> 4. <u>통합 현장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</u> <u>가. 통신 시설·장비의 성능 및 작동</u> <u>나. 비상소집활동 및 책임자들의 응소</u> <u>다. 대체 통신수단 확보</u> 5. <u>긴급구조교육수료자의 교육 실적</u> <u>가. 긴급구조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의 교육이수율</u>	<u>접수 후 조치</u> <u>나. 긴급구조지원요원의 재난 상황 정보 제공</u> <u>다. 긴급구조지원요원의 임무 수행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4. ----- ----- <u>가.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통신 시설·장비</u> <u>나.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비상소집활동</u> <u>다.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체 -----</u> 5. <u>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수료 현황</u> <u>가.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----- 관리자 긴급구조 교육 이</u>
--	--

	수
<u>나. 긴급구조 현장활동요원의 긴급구조교육과정 및 교육 이수율</u>	<u>나.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훈련 실적</u>
<u>다. 긴급구조관련기관별 자체 교육 및 훈련 실적</u>	<u><삭 제></u>
6. 그 밖에 긴급구조대응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	6. ----- -----
<u>가. 예방 가능하였던 사상자 의 존재</u>	<u><삭 제></u>
<u>나. 수송수단의 확보</u>	<u><삭 제></u>
<u>다. 수송장비의 유지 및 수리 작업</u>	<u><삭 제></u>
<u>라. 비상 및 임시수송로 확보</u>	<u><삭 제></u>
<u>마. 대응요원들의 불필요한 사상</u>	<u><삭 제></u>
<u>바. 대응자원의 분실</u>	<u><삭 제></u>
<u>사. 전문적 지식·기술·의학 · 법률 등에 관한 자문체 계 운영</u>	<u><삭 제></u>
<u>아. 대응 및 긴급복구작업에 소요된 비용 근거자료 기 록관리</u>	<u><삭 제></u>
<u>자. 통제단 운영에 대한 기록 유지</u>	<u><삭 제>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평가실시) ①·② (생략)

③ 평가항목별 평가수준은 1부터 5까지로 한다.

제42조(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)

① 평가단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군·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·도 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, 시·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.

②통제단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·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평가 종료 후 1월 이내에 해당 긴급 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1조(평가실시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
<삭 제>

제42조(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)

①

소방청장에게

②

해당

통보할

수 있다.